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
------------	----

제출일자 : '98. 9. 17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장학생 선발자격 및 지급정지요건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장학금을 객관성 있게 운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불확실한 조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객관성 부여.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7조 제1항 제1호)
- 나.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정확성을 기함.(안 제8조 제2항)
- 다. 장학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운용하며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 (안 제8조의2)
- 라. 장학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안 제8조의2)

3. 관계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
- 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156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한다.

③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하)

제8조 제목중 "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생략)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 ③일반장학생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①(현행과 같음) ②특별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 ③일반장학금은 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한다.
제7조(지급정지) ①(생략)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제7조(지급정지) ①(현행과 같음)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학급석차 또는 전교과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하)
제8조(장학금 조성 및 관리) ①(생략)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장학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업무담당주사
(신설)	제8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용한다.